음식점 창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창업]

음식점 창업은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음식점 창업을 위해 알고 있으면 좋은 법령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음식점 창업에 대해 "업종 선정, 점포 준비, 영업시설 설치, 영업신고 · 허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음식점 창업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음식점 창업 1
1. 사전 준비 4
1.1. 음식점 창업 결정 4
1.1.1. 업종 선정 4
1.1.2. 창업형태의 선택 5
1.2. 자금 준비 9
1.2.1. 자금 지원 9
2. 점포 준비 11
2.1. 입지 선정 11
2.1.1.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11
2.2. 점포 계약 13
2.2.1. 임대차계약 13
2.2.2. 임차인의 보호 15
3. 영업시설 등 설치 19
3.1.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19
3.1.1.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19
3.1.2.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22
3.2.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27
3.2.1. 상호 선정 27
3.2.2. 옥외광고물 설치 29
4. 위생 관리 35
4.1.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35
4.1.1. 건강진단 35
4.1.2. 식품위생교육 36
5. 영업신고 및 허가 등 39
5.1.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 39
5.1.1. 영업신고 39
5.1.2. 영업허가 42
5.2. 영업 승계 46
5.2.1. 영업자 지위의 승계 46
6. 사업의 등록 49
6.1. 사업자등록 49
6.1.1. 사업자 유형의 결정 49
6.1.2. 사업자등록 신청 51
6.1.3. 확정일자 신청 55

1. 사전 준비

1.1. 음식점 창업 결정

1.1.1. 업종 선정

음식점 영업

음식점 영업이란?

▪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의 유형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 Q.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
>
> A.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창업형태의 선택

음식점 창업의 형태

창업의 형태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형태는 크게 독립음식점 창업과 가맹음식점 창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음식점 창업

▪ 독립음식점 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자가 직접 입지선정, 인테리어, 매장운영, 홍보 등 음식점의 창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음식점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 방식을 말합니다.

가맹음식점 창업

▪ 가맹음식점 창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본부에 로얄티, 사용료 등을 지불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업의 기술, 노하우, 마케팅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방식으로, 독립음식점 창업보다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음식점 창업의 형태별 장·단점>

구분	가맹음식점 창업	독립음식점 창업
장점	①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②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⑥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음식점 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①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② 가맹음식점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③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④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⑥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⑦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⑧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⑨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높습니다.
단점	①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듭니다. ② 로열티나 가맹비 등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③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④ 가맹본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사야하고,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⑥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⑦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①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②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③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④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음식점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정보공개서의 확인

▪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정보공개서”란 다음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본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정보공개서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를 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그 외의 경우: 14일

▪ 가맹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 참조].

가맹음식점 창업 시 주의사항

▪ 최근 가맹음식점 창업 방식은 가맹본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로얄티 등 높은 가맹수수료,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 독자적 경영권 침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분석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만약,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 그 밖에 가맹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자금 준비

1.2.1. 자금 지원

정책자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이 경우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2).

지원방법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대출 심사·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3).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에 방문하여 접수

▹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실행절차: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대출 후 맨 처음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실태조사 실시(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지원내용

▪ 자금구분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1).

<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단위 : 억원) >

구 분	자금 개요	공급 규모	쪽수
1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2,200	6쪽
2 특별경영안정자금	위기 ·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7,200	7쪽
ㅇ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000	8쪽
	-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200	8쪽
	-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500	8쪽
ㅇ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전용 자금	7,000	10쪽
ㅇ대환대출	- 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이자부담 완화	3,000	11쪽
ㅇ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지원하는 자금	1,000	13쪽
ㅇ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전용 자금	500	15쪽
ㅇ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대표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3,000	16쪽
3 성장기반자금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7,420	17쪽
ㅇ소공인특화자금	- 소공인 전용 자금	2,000	18쪽
ㅇ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매출신장, 소상공인 졸업 후보,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기술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4,800	20쪽
ㅇ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 투자자의 투자·편딩을 받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360	21쪽
ㅇ상생성장지원자금	- 온라인 플랫폼사의 선별·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결합하여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260	22쪽
합 계		36,820	-

※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점포 준비

2.1. 입지 선정

2.1.1.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확인

▪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 **용도지역의 구분**
>
> ·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
>
>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됨)
>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규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용도변경의 대상

▪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 참조).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365(https://bigdata.sbiz.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인구통계, 지역특성, 경쟁현황, 임대시세 및 매출통계 등을 종합하여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창업예정인 점포의 상권, 업종, 매출특성, 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점포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점포의 과거 개업, 폐업 이력과 업종별 매출 예측정보, 입지특성 정보를 기존의 상권정보서비스와 결합하여 점포이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상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365(https://bigdata.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점포 계약

2.2.1.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란?

「민법」 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민법」 상 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의 관계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 다만, 대항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갱신 요구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계약갱신의 특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권리금 정의 및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차임연체와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

건축물대장의 확인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 영업 형태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확인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서식).

▹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확인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公簿)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 부동산등기부에서 해당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등에 관한 현황 및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제76조의3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내용
>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의 내용
>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사이트(seereal.lh.or.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임대차계약의 체결

계약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임대차계약의 기간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임차인의 보호

임대차등기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등기의 신청

▪ 임대차등기는 등기권리자(임차인)와 등기의무자(임대인)가 공동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등기의 효력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등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등기에 대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 임대차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과 우선변제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제5항 본문).

√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차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 임대차등기를 마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제6항).

·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②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③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 그 밖에 부동산 임대차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취득

대항력이란?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 대항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대항력의 요건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은 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 ※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우선변제권이란?

▪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우선변제권의 요건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고 ②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전단).

확정일자의 취득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 확정일자의 신청 및 취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확정일자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발생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환가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및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와 소멸

Q. 저는 이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어떠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 참조).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차계약으로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현재 주인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참조)

3. 영업시설 등 설치

3.1.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3.1.1.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영업시설의 설치

공통시설 기준

▪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공통으로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8호가목).

구 분	내 용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돼야 합니다. 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④「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5.「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6.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 · 기계 · 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 · 기계 · 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③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유주방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라).

업종별 시설 기준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업종별로 별도의 시설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나목 및 제9호).

위반 시 제재

▪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3.1.2.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나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3항).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완성검사 기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제1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8호).

>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
>
> Q.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에 주방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화상을 입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 A. 해당 음식점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음식점 영업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라목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제2호가목).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항제18호).

※ 그 밖에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시설 등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소방시설 등

1. 소화설비: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및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만 설치
2. 경보설비: 비상벨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구획된 실(室)이 있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만 설치)

▹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이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제2조).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아래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함) 1부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1부
-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함)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
-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아래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함) 1부: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1부: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함) 1부: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만약, 안전시설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받고, 보완·시정이 될 때까지 안정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①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거나 ②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또는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 ※ 그 밖에 소방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설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제4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1항).

1. 「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분야의 등록을 한 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4.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2항).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경우
3.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및 제77조제6호).
  -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3.2.1. 상호 선정

상호의 선정

상호사용권

- 음식점을 창업하는 자는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보호

상호의 등기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상법」 제34조).
- 상호를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참조).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 내 음식점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Q. 저는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일한 상호로 호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어요(「상법」 제18조). 만약, 그 상호가 이미 등기된 상호라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따라서 위 사례는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타인의 상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일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제2항, 제3항 및 제2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호 등의 보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통한 상호 등의 사용은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다목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및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타인의 상품표지"라 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①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위 ①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및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타인의 영업표지"라 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①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위 ①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위 1. 또는 2.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및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①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및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위 ①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③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⑤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및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보호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음식점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시 제재

▪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3.2.2.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조제1항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건설기계, 대여자전거
-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

허가대상 광고물

▪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함)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다만,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3.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5. 대여자전거

※ 위 1., 2., 4.의 교통수단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단서).

※ 다만, 2021년 5월 4일 전에 이미 광고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4호) 부칙 제2조제1항].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특정광고물

허가대상 게시시설

▪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

신고대상 광고물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허가 대상 광고물 제외)
  -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제외)
  -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 포함)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신고대상 게시시설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제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지역 및 장소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역·장소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4. 하천

5. 공유수면

6. 산림보호구역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8. 지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또는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9. 관공서·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도서관·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10.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합니다.

12.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위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가로등 기둥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수기 표시방법을 따라야 함)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2. 전봇대
3. 가로등 기둥
4. 가로수
5. 동상 및 기념비
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7.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8. 전망대 및 전망탑
9.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10. 재배 중인 농작물
11.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 ※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생 관리

4.1.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4.1.1.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실시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 영업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건강진단 시기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진단의 항목 및 횟수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별표).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1회/년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매독	1회/6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매독	1회/3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회/3개월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영업 종사의 제한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건강진단 결과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4.1.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의 수료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식품위생교육의 예외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식품위생교육의 유예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식품위생교육의 실시

식품위생교육 시간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식품위생교육 기관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교육대상		교육기관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위탁급식영업자 중 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대한제과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떡류식품가공업자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압착식용유가공업자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추출가공업자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 식품위생교육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신고 및 허가 등

5.1.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

5.1.1. 영업신고



영업의 신고

영업신고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제한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6.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1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
> ※ 영업신고 시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신고관청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소 시설의 확인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단서).

영업신고증 발급

▪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등록면허세의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

- 제1종: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 제2종: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 제3종: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 제4종: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1항).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위반 시 제재

영업소 폐쇄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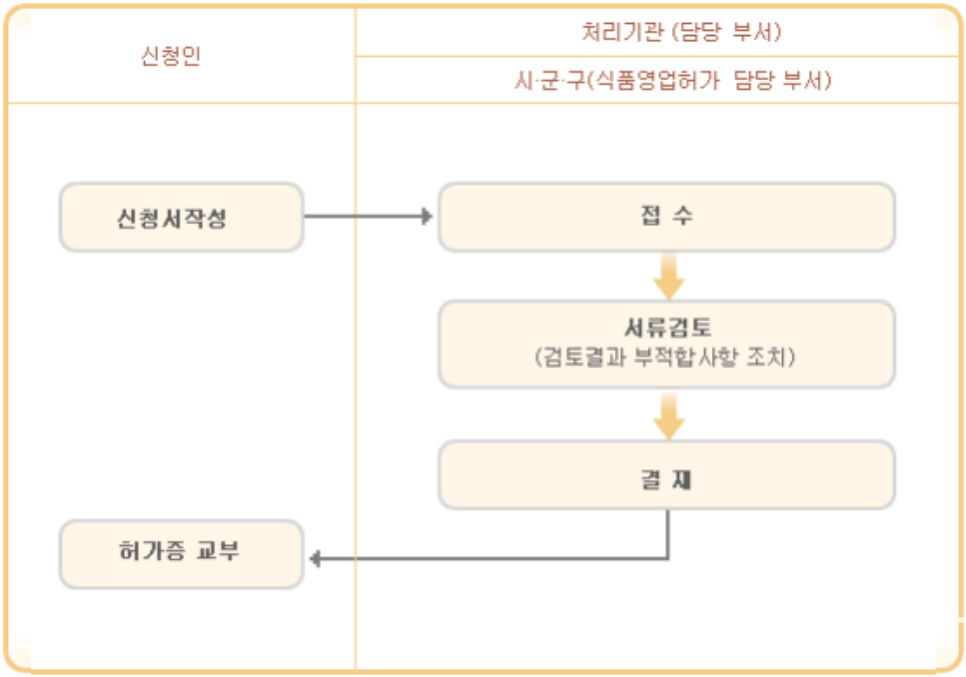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본문).

▹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단서).

형사처벌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5.1.2. 영업허가



영업의 허가

영업허가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 제한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

- 해당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제36조)에 적합하지 않은 때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를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를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영업허가 절차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1.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영업허가증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

▪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단).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영업허가 면허(제1종)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

▪ 제1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1항).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 영업허가를 받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2,100,000원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1,500,000원

위반 시 제재

영업소 폐쇄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본문).

▸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단서).

형사처벌

▪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5호).

5.2. 영업 승계

5.2.1. 영업자 지위의 승계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자의 지위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출서류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라.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3.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주방 운영업)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포함)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 **영업승계의 제한**
>
>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본문 및 제38조).
>
>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8호).
>
>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전단).

> ※ 영업허가 및 신고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 > 또는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의 효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 양수인의 책임

▪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 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양도·양수 허가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증여세 감면

영업자지위승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음식점 영업을 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의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함)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0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에서 10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4항·제15항).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6. 사업의 등록

6.1. 사업자등록

6.1.1. 사업자 유형의 결정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란?

▪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과세유형의 결정

간이과세의 신고

▪ 신규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 연간공급대가예상액
- 그 밖의 참고 사항

간이과세의 적용

▪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본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자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이상인 사업자 [다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의 포기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제출하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사업자의 인적사항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 그 밖의 참고 사항

▪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 **※ 과세유형의 변경**
>
> Q.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
> A.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6.1.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사업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자등록신청 업무처리절차도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위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항).

구 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 또는 전차한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이 표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음식점의 사업 허가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현지확인 조사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사업자등록의 거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의 강제

직권등록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미등록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4제1항).

>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Q. 친구가 명의만 빌려주면 음식점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에 바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름을 빌려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다만, 다음의 자는 제외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 사업자의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

이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본문,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6.1.3.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의 의의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확정일자의 효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적용대상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

확정일자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임차인은 상가건물 소재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함)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단서).

▪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확정일자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차인은 위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 부여 및 교부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함)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합니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확정일자 교부

▪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줍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